■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2)
판매업 대표전화		02-3484-5700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1-Methyl-2-pyrrolidinone
	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 No.)	872-50-4
	용도	수질 분석용 시약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 취급시 보안경, 안면보호구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할 것 -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 노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기질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화학사고 예방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산을 중화하여 염과 물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할 것 - 아이소사이안산, 할로겐화 유기물, 과산화물, 페놀류, 산성, 에폭사이드류, 무수물 및 산 할로겐물과 반응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발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즉, 질산염, 산화성산, 염소 표백제, 염소계 살균제등 산화제에 의한 오염에 주의할 것 -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도록 주의할 것
	보관・저장	- 서늘하고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확실하게 밀폐하여 저장할 것 - 식료품 저장 용기와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할 것 - 연기, 직사광선, 열, 스파크, 화염을 피해 저장할 것 - 원래의 용기에 저장할 것
	운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
	기타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